(사)대한화장품협회

KOREA COSMETIC ASSOCIATION

0723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호(여의도동, 금산빌딩) /전화*785-7985 /팩스*782-6659 담당부서 : 경영지원팀 담당부서장 : 임종근 부장 담당자 : 이병수 대리 e-mail : jacklbs@kcia.or.kr

대한장협: 제11-507호

시행일자: 2018, 11, 27,

수 신 : 화장품 제조업자 및

제조판매업자 대표이사

참 조 :

제 목 : 화장품관련증명서 발급규정 개정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- 2. 우리협회에서는 도로명주소법상 구주소와 신주소를 병행표기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의 만료에 따라 '도로명주소변경증명서'를 삭제하고, 기타 주소변경 사항 등에 대한 증명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'기타주소변경증명서'를 신설하였습니다.
- 3. 또한 외국협회 및 국가기관 증명서 발급 수수료 수준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화장품관련증명서 발급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- 4. 위와 같이 개정된 화장품관련증명서 발급규정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, 향후 증명서 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수수료 인상 내용

| 증명서 종류 | 개정 전 | 개정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제조업자, 제조판매업자, 기타주소변경 증명서 | 회원사 5,000원 비회원사 10,000원 | 회원사 10,000원 비회원사 20,000원 |
| 제조, 제조판매 증명서 | 회원사 10,000원 비회원사 15,000원 (10품목이상 1품목 추가 1,000원) | 회원사 15,000원 비회원사 30,000원 (10품목이상 1품목 추가 1,000원) |

붙임: 화장품관련증명서 발급규정 1부. 끝.

(사)대한화장품협

